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상 표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허심판에서 합의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하여 심판장을 확대함으로써,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각 심판장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심판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8조)

- 1) 특허심판원 개원('98년) 당시 심판장 13명과 심판관 26명으로 심판장 1명이 2명의 심판관을 통솔하였으나, 특허심판 사건이 증가하면서 '20년 현재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96명으로 심판장 1명이 평균 8.7명의 심판관을 통솔하여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2) 이에,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함
- 3) 심판장이 통솔하는 심판관 수를 적정화함으로써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급”을 “4급 이상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생략)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현재와 같음)
②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u>3급</u>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 ----- ----- ----- <u>4급 이상의</u> ----- ----- -----. ----- ----- ----- ----- ----- ----- ----- ----- ----- ----- ----- ----- -----.
1.·2. (생략)	1.·2. (현재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재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심판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583